
재심

Korea Press Ethics Commission



-
- 이 심의결정집은 언론계, 학계 등 관계분야의 연구자료로써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인용하실 경우 사건 관계인사 등의 명예와 권익보호를 위하여 가공의 주소나 가명 또는 기호로써 대신하시기 바랍니다.
 - 지면 사정으로 전체 내용을 다 실지 못했으므로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시면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www.ikpec.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심 2014-1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신문 발행인 이 철 휘

〈주문〉

서울신문 2014년 5월 13일자 1면 「서울시장 정몽준 對 박원순」 제목의 기사*의 관련 사진과 편집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제876차 회의(5월 28일)에서 내린 ‘주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서울신문이 제기한 재심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014년 5월 13일자 1면 ‘서울시장 정몽준 대 박원순’ 제목의 기사의 관련 사진과 편집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결정문과 관련해서 본사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이날 편집국 회의에서 정몽준·박원순 두 사람의 사진을 선택한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날은 정몽준 의원이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날입니다. 따라서 정몽준 의원의 사진을 전면에 내고, 또 여야 형평성을 고려해 박원순 후보의 사진도 함께 게재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가판에 정몽준·박원순 두 서울시장 후보의 사진을 나란히 게재했습니다.

가판이 나오고, 저녁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사진부에 정몽준 의원이 후보 수락연설 도중 울먹이는 사진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정 의원이 우는 모습은 독자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사진을 쓰기로 했습니다. (5월 13일자 조간 가운데 정 의원이 우는 사진을 쓰지 않은 신문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날자 우리 신문 3면에 ‘광역단체장 유력후보 분석’ 시리즈의 서울시장 편이 게재됐습니다.(첨부 1 참조) 이 기사에도 정몽준·박원순 두 후보의 사진이 게재됐습니다. 다만, 그래픽용 사진이었기 때문에 따로 사진설명은

* 134쪽 제2014-1152호 참고

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3면에 정 후보의 우는 사진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정 의원이 우는 사진을 다른 곳에 쓰게 되면, 이날자 신문에 정 의원 사진이 3장이나 게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정 후보가 우는 사진은 1면에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10판부터 정 의원이 우는 사진이 1면에 게재됐습니다. 사진부에서는 정 의원 사진을 교체하면서 박원순 시장 사진도 새로 냈습니다. 박 후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15판 제작을 마치고 일부에서 정 의원이 울고, 박 시장이 웃는 모습을 너무 대조시키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야근자들의 회의 결과, 지적이 타당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별 문제가 안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거철이기 때문에 가급적 신중하자는 취지로 박 시장이 덜 웃는 표정의 사진을 찾아 교체했습니다.

이제 결정문에 대한 본사의 입장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결정문은 ‘정 의원은 아들 문제로 울먹인 것이라는 것이고, 박 시장에 대해서는 왜 미소 짓는지에 관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박 시장이 미소 짓는 이유는 ‘새정치연합 서울시장 후보로 이미 확정된 박원순 시장이 이날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를 예방하기 위해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로 들어서고 있다’는 사진설명에 이미 들어있습니다. 공동대표를 예방하는 김 대표가 환하게 웃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날 박 시장의 공개된 행사는 두 대표 예방뿐이었습니다. 따라서 박 시장이 행사에서 웃는 사진을 쓰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다른 신문들도 이와 같은 이유로 정 의원이 울고, 박 시장이 웃는 사진을 1면 등에 게재했습니다. <첨부 2 참조>

둘째, 결정문은 ‘죽음보다 아픈 세월호 트라우마’라는 별개의 기사 본문을 이 사진들과 대칭되도록 배치하고 그 제목을 해당 기사 공간을 넘어 통단 제목으로 키우면서 두 사람의 사진 위아래까지 이르도록 했다. (중략) 결과적으로 1면

을 처음 본 독자들은 ‘죽음보다 아픈 세월호 트라우마’ 속에서 정 의원은 울고 있고, 박 시장은 웃고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수 있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문을 보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을 보면 정 의원과 박 시장의 사진은 세월호 트라우마 기사가 아니라 ‘서울시장 정몽준 대 박원순’ 기사의 관련 사진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 의원이 우는 이 유가 세월호 트라우마 때문이 아니라 아들의 ‘미개인’ 발언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사진설명을 보면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문을 읽는 독자들이라면 대부분 전날 뉴스 등을 통해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시민들과의 소통을 가장 큰 강점으로 삼고 있는 박 시장이 세월호 트라우마와 관련해서 웃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도 크게 설득력을 갖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세월호 트라우마 기사가 통단으로 편집돼 정몽준·박원순 두 사람의 사진 위까지 이어진 부분입니다. 만일 세월호 트라우마 기사가 이날의 단발적인 기사였다면, 본지도 이 부분을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다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는 ‘세월호 정국’으로 모든 신문이 세월호 기사를 크게, 많이 쓰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을 통단으로 한 것은 사회부 기자들의 품이 많이 들어간 기획 기사를 돋보이게 하려는 편집자들의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 바로 아래 ‘박지영 씨 등 승무원 3명 의사자 인정’이란 제목의 세월호 관련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따라서 이날자는 전체적으로 1면의 틀이 미리 짜여서 편집의 묘를 발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장 정몽준 대 박원순’ 기사의 제목을 위로 올리고 사진을 그 아래로 내렸으면, 위원회가 지적하는 오해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편집을 하면 1면의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결정문은 ‘이 면 편집은 편집자의 능력이나 판단의 부족에 따른 실수라기보다는 의도적인 편집이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서울신문이 꼭 잡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회 측에서도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의 정치는 여와 야, 보수와 진보 세력으로 양극화

돼 있고, 이것이 국민통합을 해치는 문제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과 방송도 이념과 정치 상황에 따라 편집방향이 고착되거나 흔들린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울신문은 이념에 편향되지 않고 중도적인 편집을 고집하는 많지 않은 언론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울신문은 최근 들어 정치적 편향적인 보도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각 정파들로부터 ‘도와주지 않는다’는 불만만 듣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를 서울신문이 의도를 갖고 특정 후보측에 유리하게 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에 서울신문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합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처리해주시길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

<첨부 2-1>

<첨부 2-2>

2. 위 재심청구 사유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서울신문은 위 재심청구 사유에서 문제의 기사의 사진을 선택하게 된 배경과 편집국의 논의과정을 밝히고, 비슷한 사진을 게재한 다른 신문과 다를 바 없는 편집임을 주장하고 있다. 정몽준 의원의 울먹이는 사진은 독자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한 것으로 뉴스 가치가 있고, 박원순 시장의 웃는 사진은 이날 야당 대표를 방문하는 의미 있는 공개행사여서 두 사진 선택이 불가피 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유사한 포맷의 한국일보 1면 사진과 해설면의 한겨레, 경향신문 사진을 첨부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서로 대비되는 울고 웃는 사진만을 놓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서울신문의 주장처럼 정 의원이 후보 수락연설 도중 울먹이는 모습은 뉴스가치가 있고, 거의 모든 매체가 보도했다. 또한 박 시장이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를 예방하기 위해 웃는 얼굴로 국회 당 대표실로 들어서는 사진 또한 뉴스가치가 있고, 대부분의 매체가 보도했다. 서울신문이 첨부한 한국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의 기사처럼 일부 언론은 대비되는 두 사진을 나

란히 실었다.

윤리위는 이러한 사진 배치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다. 위 사진과 관련된 편집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서울신문이 첨부한 다른 매체기사와의 형평성을 다룰 일은 아니다.

또 윤리위가 ‘정 의원은 아들 문제로 울먹인 것’이라는 것이고, 박 시장에 대해서는 왜 미소 짓는지에 관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해 서울신문은 “박 시장이 미소 짓는 이유는 ‘새정치연합 서울시장 후보로 이미 확정된 박원순 시장이 이날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를 예방하기 위해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로 들어서고 있다’는 사진설명에 이미 들어있습니다. 공동대표를 예방하는 김 대표가 환하게 웃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고 설명했으나 그러한 사진설명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사진 내용은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므로 굳이 사진 설명을 따로 달 이유가 없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두 사진을 본 일부 독자들이 “박원순이는 이 판에 뭐가 좋다고 웃고 다니는 거야?”라는 좋지 않은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시선에 대해 위 사진 설명은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2) 서울신문은 청구 사유에서 윤리위가 결정문을 통해 “죽음보다 아픈 세월호 트라우마’라는 별개의 기사 본문을 이 사진들과 대칭되도록 배치하고 그 제목을 해당 기사 공간을 넘어 통단 제목으로 키우면서 두 사람의 사진 위까지 이르도록 했다. (중략) 결과적으로 1면을 처음 본 독자들은 ‘죽음보다 아픈 세월호 트라우마’ 속에서 정 의원은 울고 있고, 박 시장은 웃고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수 있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 서울신문은 “이는 신문을 보기 나름”이며 “신문을 보면 정 의원과 박 시장의 사진은 세월호 트라우마 기사가 아니라 ‘서울시장 정몽준 대 박원순’ 기사의 관련 사진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면 톱기사 통단제목 아래 사진을 배치하는 것은 관련 기사의 사진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편집이다. 예를 들어 서울신문은 6월 16일자, 19일자, 20일자, 23일자, 24일자 1면 톱 기사의 관련 사진을 큰 제목 바로 밑에 배

치했다. 따라서 독자들은 자연스레 위 사진이 해당 기사의 관련 사진으로 인식하게 된다. 편집 기술상 이러한 편집 특성 때문에 편집자는 사진기사가 별개의 기사인 경우 박스 처리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서울신문이 재심신청서에 첨부한 한국일보의 1면 기사도 다른 기사와 명확히 구분이 되도록 사실상 박스 처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서울신문의 해당 사진 기사는 별도의 박스처리 등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고 ‘죽음보다 아픈 세월호 트라우마’라는 1면 톱기사 제목 바로 아래 배치됐다. 최근 서울신문의 1면 편집 추세를 감안하면 위 사진 기사는 ‘죽음보다 아픈 세월호 트라우마’라는 1면 톱기사의 관련 사진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서울신문도 청구 사유에서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세월호 트라우마 기사가 통단으로 편집돼 정몽준·박원순 두 사람의 사진 위까지 이어진 부분”이라며 “‘서울시장 정몽준 대 박원순’ 기사의 제목을 위로 올리고 사진을 그 아래로 내렸으면, 위원회가 지적하는 오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그러면서도 신문을 읽는 독자라면 대부분 전날 뉴스를 통해 정 의원의 우는 이유를 다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시민과의 소통을 가장 큰 강점으로 삼고 있는 박시장이 세월호 트라우마와 관련해 웃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도 크게 설득력을 갖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서울신문 편집국의 판단일뿐 독자가 혹시라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반박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서울신문은 또 “‘서울시장 정몽준 대 박원순’ 기사의 제목을 위로 올리고 사진을 그 아래로 내렸으면, 위원회가 지적하는 오해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편집을 하면 1면의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1면의 모양’이라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이를 무릅썼다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볼 때 ‘1면의 모양’과 ‘오해의 소지’ 사이에서 진지한 고민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서울신문은 청구서에서 ‘이 면 편집은 편집자의 능력이나 판단의 부족에 따른 실수라기보다는 의도적인 편집이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는 윤리위 지적에 대해 “서울신문은 이념에 편향되지 않고 중도적인 편집을 고집하는 많지 않은 언론사 가운데 하나”라며 “이번 보도를 서울신문이 의도를 갖고 특정 후보측에 유리하게 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리위가 서울신문이 이념에 편향되었다거나 중도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하는 게 아니다. 또 ‘의도적인 편집이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것은 의도성이 있었느냐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며, 의도성이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러한 면 편집으로 독자들로부터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의도적인 편집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겠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신문의 1면 편집은 편집부 선임기자가 담당하고, 편집부의 데스크와 담당 부국장, 국장까지 꼼꼼하게 검토한 후에 결정된다는 사실은 언론계 내부의 비밀이 아니다. 언론계 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독자라면, 1면의 중요성을 다소라도 인지하고 있는 독자라면 위 면 편집이 편집자의 능력이나 판단 부족에 따른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서울신문도 청구 사유에서 “(제작과정에서 편집국) 일부에서 정 의원이 울고, 박 시장이 웃는 모습을 너무 대조시키는 것에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왔다”며 “선거철이기 때문에 가급적 신중하자는 취지로 박 시장이 덜 웃는 표정의 사진을 찾아 교체했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의 사진 기사는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편집자의 실수는 아닌 셈이다.

서울신문은 제작 의도에 불순성이 없었으며 ‘세월호 정국’인 상황에서 이러한 내용의 면 편집이 불가피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독자에게 전달된 지면은 의도나 제작과정과 관계없이 그 자체만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신문을 내놓고 제작 의도와 다른 오해를 하는 독자가 있을 경우 ‘우리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해명하기보다는 미리 독자의 시선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러한 점에서 윤리위는 서울신문이 이 면 편집에 좀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유로 윤리위의 5월 결정문 취지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심 2014-2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신문 발행인 이 철 휘

〈주문〉

서울신문 2014년 6월 12일자 1면 「문창극〈총리후보자〉 “日 식민지배 하나님 뜻” 망언」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제877차 회의(6월 25일)에서 내린 ‘주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서울신문이 제기한 재심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문창극 총리 후보자 “日 식민지배 하나님의 뜻” 망언이라고 보도한 서울신문 2014년 6월 12일자 1면의 기사와 제목 등에 대해 ‘주의’ 조처한 것에 대한 서울신문의 입장

일부 매체들은 있는 것 없는 것 흠집만 찾아내려고 하고, 또 반대편 진영의 매체들은 있는 것조차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감싸려고만 했던 게 문창극 후보자의 사태 초기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하지만 서울신문은 이념적으로 편향된 최근의 한국 언론풍토에 휩쓸리지 않고 팩트 위주로 전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된 기사나 제목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먼저 밝힌다. KBS의 보도를 보고 그 내용을 독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뿐, 어떤 사감이나 편견도 없었다는 점을 밝힌다. 서울신문의 보도는 ‘공영방송’이라는 KBS 보도를 근거로 해서 이뤄졌다는 점을

* 234쪽 제2014-1187호 참고

밝힌다.

〈‘망언’과 관련한 입장〉

1.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일본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 “남북 분단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망언’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게 망언인가.

이런 표현, 특히 “일본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한 것을 망언으로 볼 수 없다면, 그동안 한국의 대부분 언론들이 일본 총리나 장관 국회의원들의 망언이라고 보도한 것은 지탄을 받아야 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도 마땅히 조치를 내렸어야 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셈이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논리와 잣대대로 라면 일본 총리 등의 말을 망언이라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할 수 없다.

비슷한 사안을 놓고 일본 사람이 말한 것은 망언이라고 해도 괜찮고, 한국 사람이 말한 것은 망언이라고 하면 안되는가. 오히려 한국 사람이 말한 것은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2.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잣대대로 ‘망언’이 아니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왜 국무총리 후보직 사퇴를 수용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망언도 아닌 것을 기초로 해서 국무총리 후보직 사퇴를 수용한 박근혜 대통령과, 또 사퇴를 중용한 청와대측에 문제가 많은 것이다.

3.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2014년 7월 7일 비서실의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 ‘역사관 논란을 초래했던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교회 강연 발언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느냐’는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의 질문에 대해 “KBS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 앞으로 더 노력해 후보자 언행에 대한 확인 노력을 경주코자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의 이러한 멘트는 무엇을 뜻하는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교회 발언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면, 문 후보자는 국무총리로 추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얘기한 것이다. 문창극 후보자의 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에, “앞으론 더 노력해 후보자 언행에 대한 확인 노력을 경주코자 한다.”고 김 실장이 밝힌 게 아닌가.

4. 한국역사연구회와 한국사연구회 등 한국사관련 단체 7곳도 “문 후보자의 발언은 제국주의 역사관으로 비판받았고 이제는 극복됐다고 여겨진 서구의 오리엔탈리즘과 일제의 식민사관, 그리고 극단적 반공국가주의 역사관을 신앙적 차원으로까지 내면화한 상태에서 한 망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왜 스트레이트성에 의미를 담았냐는 지적에 대해〉

1. 왜 사실을 전달하는 스트레이트 기사에 의미를 담은 표현을 했느냐는 지적에도 동의할 수 없다. 기사는 스트레이트와 박스(해설)로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기사도 있지만 경계선이 불분명한 기사가 요즘에는 상당히 많다. 보통 기자들이 스팩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이트와 박스를 합친 것이고, 단순하게 스트레이트만 담아서 기사 약할 수도 있고 단조로울 수도 있어, 의미나 전망 등을 담아서 기사를 만드는 것은 기본이 된지 오래다.

1면톱에 그런 유형의 기사가 넘쳐난다. 그런 경향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 그런데도 왜 스트레이트인데 의미를 담느냐고 하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2. 왜 “총리 후보직 사퇴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썼는가

한국사회에서 ‘친북’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무감각한 세상이 되고 말았지만 친일은 아니다. 특히 최근 아베정권의 납득할 수 없는 행보에다 박근혜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까지 종합하면 ‘친일파’가 국무총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은가. 서울신문은 그런 보통의 상식에 기반해, 그런 친일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면 일본과 각을 세우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이 상식적으로 국무총리로 함께 갈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전망기사를 녹여쓴 것이다.

다른 매체들은 문창극 후보자의 말을 단순하게 보도하거나, 보도하지 않으려고 애쓴 시간에 서울신문은 친일이라는 파급효과를 간파하고, 앞서서 예상하고 분석해서 기사를 쓰고 제목에도 반영한 것이다.

정치.경제.사회는 물론 체육, 월드컵 기사까지 예상기사를 쓰는 세상에 왜 예상기사, 전망기사를 썼다는 것을 지적했는지 수궁하기 어렵다.

〈결어〉

앞서 밝혔지만 서울신문은 현재 신문 중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매체라고 자부한다. 무슨 사안에 대해, 어떤 의도를 갖고 부풀릴 생각도 없고, 또 감출 생각도 없다. 문창극 후보자에 대한 기사와 제목도 마찬가지로, 지극히 상식적인, 한국의 사람으로, 한국의 기자로 생각할 수 있는 데 기반을 두고 기사를 쓰고, 제목만 달았을 뿐이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대한다.』

2. 위 재심청구 사유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서울신문은 위 재심청구 사유에서 “일본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 “남북 분단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망언’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게 망언인가라고 되묻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언론이 일본 총리의 비슷한 발언을 망언으로 보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보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문윤리위원회(이하 신문윤리위)는 문 후보자의 발언 내용 자체가 망언인가 아닌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 결정문에서 밝혔듯이 “문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망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려면 그의 발언 내용이 전체적인 문맥이나 구체적인 표현에서 있어 ‘망언’의 정의에 맞는다고 단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서울신문이 보도의 근거로 삼았다고 밝힌 KBS 보도의 녹취 내용을 보면 문 후보자는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항의할 수도 있겠지, 속으로.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너희들은 이조 5백년 허송세월을 보낸 민족이다. 너희들은 시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이 발언 내용을 “일본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것으로 단순화한 뒤 이를 ‘망언’으로 단정해 보도했다.

그러나 위 발언 내용은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또 강연 전체의 내용과 맥락을 감안하면 발언의 취지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 문 후보자의 위 발언 내용을 놓고 이는 ‘일본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것이라는 기술에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이를 ‘망언’이라고 단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스트레이트기사에서 개개인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문 후보자의 발언을 기자의 주관적인 해석을 토대로 ‘망언’으로 단정한 것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않은 보도 태도이고, 신문윤리위는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다.

2) 서울신문은 청구 사유에서 “‘망언’이 아니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왜 국무총리 후보직 사퇴를 수용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망언도 아닌 것을 기초로 해서 국무총리 후보직 사퇴를 수용한 박근혜 대통령과, 또 사퇴를 종용한 청와대측에 문제가 많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자가 ‘망언’을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문 후보자의 사퇴를 수용했고, 청와대가 사퇴를 종용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 후보자의 총리직 사퇴와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서울신문의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는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그의 사퇴와 사퇴 수용이 강연에서의 발언이 망언이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고 아전인수다. 또 서울신문이 언급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회답변 내용에 대해서 바로 문 후보자의 발언이 망언이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비약이다.

서울신문은 또 한국사 관련 단체 7곳도 ‘망언’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나름 ‘망언’의 근거를 대고 있으나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입증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 단체의 성명은 주관적인 판단의 문제일 뿐 문 후보자의 발언 내용이 망언이라는 결정적인 근거는 되지 못한다. 이들 단체와 달리 문 후보자의 발언 내용에 대해 다른 견해를 보이며 옹호하는 단체와 개인들도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3) 서울신문은 청구 사유에서 ‘친일파’가 국무총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기 때문에 문 후보자가 친일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상식적으로 국무총리로 기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총리 후보직 사퇴가 불가피할 전망”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일’의 파급효과를 간과해 예상하고, 분석한 기사이며 이를 제목에도 반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신문은 기사에서 “우리나라 총리 후보자의 발언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참담한 망언이어서 총리 후보직 사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라고 기술했을 뿐 위와 같은 주장을 구체적으로 기사에 담지는 않았다. 그리고 문 후보자의 발언 내용에 대한 서울신문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기술만 가지고 “총리 후보직 사퇴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적는 것은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신문윤리위는 서울신문의 주장처럼 “총리 후보직 사퇴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는 예상 기사를 작성한 것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전망’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내놓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스트레이트 기사에 의미가 담길 수도 있고 의견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의미 부여나 의견 개진이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다면 그 기사는 스트레이트 기사를 가장한 주장의 나열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한 기사는 신문기사의 생명인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기사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 신문윤리위는 그 점을 경계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유로 신문윤리위의 6월 결정문 취지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심 2015-1 신문윤리강령 위반

시민일보 발행인 최 정 호

〈주문〉

시민일보 2014년 11월 6일자 1면 「朴<박원순>시장 연루 정황 포착 가능성…대권행보 제동?/‘강남 구룡마을 개발특혜’ 의혹사건 檢 특수부서 수사 본격 착수」*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제881차 회의(11월 26일)에서 내린 ‘주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시민일보가 제기한 재심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본 신문은 2014년 11월 6일자 1면 ‘박 시장 연루 정황 포착 가능성…대권행보 제동?(이하 생략)’ 등 제하의 기사와 관련, 선부른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과장왜곡했다는 의심의 소지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2. 그러면서 윤리위는 본보 기사의 오류를 지적하는 근거로 박원순 시장 피고발 사건의 특수4부 배당과 관련, “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한 익명의 검찰 관계자 코멘트를 인용한 ‘뉴스1’ 기사를 제시했습니다.

3. 비교할 때, 위 ‘뉴스1’기사의 익명 코멘트가, 박원순 시장을 고발한 복수의 사건이 이례적으로 정관계 비리 등 인지수사를 담당하는 특수4부에 배당된 정

* 248쪽 제2014-1325호 참고

황보다 신뢰적 가치가 크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4. 또 검찰은 현재 본 고발 건에 대해 일절 노코멘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는 윤리위가 의미를 부여한 뉴스1의 검찰관계자 코멘트와 상반되는 상황 이어서 진실의 실체 역시 모호합니다.

5. 이같은 사유 등으로 본보 보도에 대한 윤리위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오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재심청구 사유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시민일보는 위 재심청구 사유에서 뉴스1이 인용한 익명의 '검찰 관계자' 코멘트를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시민일보 기사의 오류를 지적하는 근거로 제시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시민일보는 "큰 의미가 아니다"라는 익명의 코멘트가 『박원순 시장을 고발한 복수의 사건이 이례적으로 정관계 비리 등 인지수사를 담당하는 특수4부에 배당된 정황보다 신뢰적 가치가 크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민일보는 『검찰은 현재 본 고발 건에 대해 일절 노코멘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윤리위가 의미를 부여한 뉴스1의 검찰 관계자 코멘트와 상반되는 상황 이어서 진실의 실체 역시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의 코멘트가 사실인지 조차도 의심스럽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2) 시민일보 기사의 토대는 노컷뉴스가 지난 해 11월 5일 06:00에 단독으로 보도한 「검, 박원순 겨냥한 '구룡마을 개발특혜 의혹' 특수부 배당」 제목의 기사다. 서울 강남구청이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해 지난 해 7월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과 SH공사 관계자 5명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특수4부에 배당했다는 내용이 기사의 핵심이다. 노컷뉴스는 "통상적으로 고발건은 형사부나 조사부에 배당되는데, 정관계 비리 등 인지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은 이례적으로 여겨진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민일보는 이 문장

을 포함, 노컷뉴스 기사의 몇몇 주요 대목을 인용해 문제의 기사를 보도했다.

3) 시민일보가 지목한 뉴스1 기사는 노컷뉴스보다 3시간 50분가량 늦은 11월 5일 09:50에 송고한 「검찰, '구룡마을' 관련 강남구청 고발건...특수부 배당」 제목의 기사다. 뉴스1 역시 강남구청 고발 사건이 특수4부에 배당된 것을 기사의 핵심으로 내세우면서도 "서울시와 관련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수사 의뢰 부분을 특수4부에서 맡고 있어 같은 부서에 배당한 것이지 혐의점을 발견했다든지 하는 등 큰 의미가 있어서는 아니다"라는 '검찰 관계자'의 설명을 함께 전했다. 새누리당 의원 14명은 지난 해 2월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해 "특정 대지주에게 특혜를 줄 수 있도록 개발 방식이 부당 변경됐다"고 주장하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전·현직 간부 7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정관계 권력형 비리를 주로 수사하는 특수4부에서 맡도록 했었다. 그리고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된 강남구청 고발사건이 접수되자 박 시장 피고발 사건과 함께 수사하도록 특수4부에 배당했다는 것이 뉴스1이 소개한 검찰 관계자 설명의 핵심이다.

4) 신문윤리위가 검찰 관계자 코멘트에서 주목한 대목은 특수4부에 배당된 경위다. 특수4부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고발사건을 맡아 온 상황에서 비슷한 성격의 강남구청 고발사건을 배당받았다면, 시민일보가 재심신청서에서 주장한 것처럼 '이례적'일 수가 없다. 시민일보는 검찰 관계자 코멘트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문제의 코멘트가 노컷뉴스의 단독보도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해명성 언급의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특정 사건을 어느 부서에서 맡았는지에 대한 언급 정도를 놓고, 신뢰성을 따지는 것 자체가 법조 취재 관행에 비추어보면 지나치다고 할 것이다.

5) 시민일보는 재심신청서에서 박원순 시장이 고발된 사건을 '복수'라고 기술했지만 박 시장은 새누리당 의원 고발사건의 피고발인일 뿐이다. 강남구청 고발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아니다.

그런데도 시민일보는 강남구청 고발사건이 특수4부에 배당됐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권행보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썼다. 누가 그렇게 관측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기사에는 없다. 그러면서 기사의 큰 제목도 「朴시장 연루 정황 포착 가능성…대권행보 제동?」이라고 달았다.

노컷뉴스 기사에는 박 시장과 관련해 이 같은 표현은 없다. 그리고 시민일보 기사에도 추가로 취재했거나 새로 확인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박 시장이 연루됐다는 정황이라도 드러난 것처럼 독자가 느끼도록 작성된 시민일보 기사와 제목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라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유로 신문윤리위의 11월 결정문 취지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시민일보의 위 재심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심2015-2 신문윤리강령 위반 영남일보 발행인 손 인 락

〈주문〉

영남일보 2015년 1월 5일자 1면 「대구 수성의료지구 롯데 먹튀의 그림자/상업지구 매입계약 확인/“이시아폴리스 재판” 우려」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제883차 회의(1월 14일)에서 내린 ‘주의’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영남일보가 제기한 재심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 477쪽 제2015-1006호 참고

『1. ‘기사에서 왜 먹튀인지에 대한 추가 설명이 없다’는 지적에 대하여=

기사에 언급돼 있듯 롯데는 이미 대구 봉무동 이시아폴리스 조성 당시 약속을 어긴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은 수도 없이 제기된 터이기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영남일보의 입장입니다. 영남일보는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하는 신문이기에 이 사안에 대해 시도민들이 롯데의 전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 ‘기사 큰 제목을 (먹튀)라고 달아 기정사실화했다’ ‘제목만 놓고 보면 롯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돈만 챙겨 달아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사전에는 ‘먹튀’에 대하여 [프로 스포츠 리그에서 높은 계약금이나 연봉을 받고 이적한 선수가 이적한 팀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활약을 보일 때 그 선수를 일컫는 말(네이버 오픈 국어 인용)]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달아났다’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활약’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본지는 롯데가 수성의료지구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업을 진행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지역언론으로서 이전 이시아폴리스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본지는 귀 위원회가 흑시(먹튀)에 대한 개념을 ‘달아나다’에 방점을 둔 탓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설령 위원회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제목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본지의 판단입니다. ‘도망갔다’ 혹은 ‘달아났다’에 방점을 두고 먹튀 개념을 규정하나 하더라도 귀 위원회의 지적과 달리 본지 제목에서는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 본지는 ‘먹튀’라고 단정적으로 제목을 다는 대신, ‘먹튀의 그림자’라고 표현해 기정사실화하지 않았습니. ‘그림자’는 그런 기운이 있다는 뜻이지 실제 구현된 결과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정사실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어른거린다는 뜻입니다.

3. 물론 롯데의 이미지 훼손이 우려되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 전례에서 보듯 막대한 혜택을 누리기도 당초 약속과 달리 지역에 기여하지 않는 대기업의 사업 개발 행태는 마땅히 지탄받아 마땅하며, 이를 경계하는 보도는 지역언론으로서 당연히 보도해야 할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4. 또한 이 기사와 관련 본지는 롯데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항의나 반론제기를 받은 바 없습니다. 이 기사로 피해를 봤다고 가정한다면 당연히 가장 먼저 롯데의 항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5. 따라서 본지는 귀 위원회에 재심의를 정중히 청구하는 바입니다.』

2. 위 재심청구 사유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영남일보는 위 재심청구 사유에서 롯데가 대구시 봉무동 ‘롯데 아울렛 이시아폴리스’를 조성할 당시 약속을 어긴데 따른 비판은 수도 없이 제기돼 왔고, 이에 따라 ‘달아났다’보다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에 방점이 있는 ‘떡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지적받을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다.

영남일보는 이어 설사 ‘떡튀’의 의미가 ‘달아났다’에 무게가 있더라도 제목에는 ‘떡튀의 그림자’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림자’는 그런 기운이 있다는 뜻이지 실제로 구현된 결과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문윤리위원회가 롯데 측에 ‘답변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을 지적한 데 대해서는 『이 기사와 관련 롯데는 어떠한 형태의 항의나 반론을 제기한 바도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

2) 신문윤리위원회가 영남일보 기사에 대해 문제 삼은 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기사 큰 제목을 「대구 수성의료지구 롯데 떡튀의 그림자」라고 달아 ‘떡튀’를 기정사실화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제목이나 기사의 내용으로 미루어 롯데

측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도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3) 영남일보는 ‘떡튀’라는 표현과 관련, ‘프로스포츠 리그에서 높은 계약금이나 연봉을 받고 이적한 선수가 이적한 팀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활약을 보일 때 그 선수를 일컫는 말로, 〈먹고 튀었다〉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라는 ‘네이버 오픈 국어’의 해석을 인용하면서 ‘달아났다’가 아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활약’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떡튀’는 표준어가 아니고, 시중에 유행하는 비속어일 뿐 아직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영남일보가 인용한 ‘네이버 오픈 국어’의 해석은 익명의 한 네티즌이 올려놓은 글일 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 ‘떡튀’에 대해 ‘다음 국어사전’은 ‘거액의 돈을 벌어들이고 그 만큼의 구실은 하지 않은 채 수익만을 챙겨서 떠나는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로 볼 때 ‘떡튀’는 영남일보가 인용한 네이버 오픈 국어의 풀이보다는 ‘수익만을 챙겨서 떠나는 것’이라는 데에 무게가 있음을 알게 된다. ‘다음 국어사전’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편찬한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이 제공하는 콘텐츠로 서비스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익명의 네티즌 한 사람보다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편찬한 사전의 낱말 정의에 더 공신력이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4) 영남일보는 설사 ‘달아났다’에 무게를 두더라도 제목에는 ‘떡튀’라고 단정하지 않고 ‘떡튀의 그림자’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기정사실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전체 기사의 맥락을 놓고 보면 ‘떡튀’는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은 ‘롯데 아울렛 이시아폴리스’를 겨냥한 표현이고, 롯데가 새로 사들인 수성의료지구 내 유통상업지구에는 바로 그 ‘떡튀’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뜻으로 제목이 달렸다고 해야 어법에 맞다. 이 기사에서 ‘떡튀’와 ‘떡튀의 그림자’는 그 대상이 각기 다르다. 신문윤리위는 ‘롯데 아울렛 이시아폴리스’를 ‘떡튀’로 단정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5) 영남일보는 『이 기사로 피해를 봤다고 가정한다면 당연히 롯데의 항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롯데 측에 해명이나 반론을 기사에 반영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주장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④(답변의 기회)는 『보도기사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비방적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롯데 측이 의도적으로 피하지 않는 한 롯데 측의 반론을 해당 기사에 반영하는 것이 보도의 기본원칙이며, 이 점에서 문제의 기사에 대해 롯데 측의 항의가 없었다는 영남일보의 설명은 ‘답변의 기회’를 주지 않은 데 대한 적절한 해명이 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유로 신문윤리위의 1월 결정문 취지는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영남일보의 위 재심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